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1
------	-----

2015. 6. 29.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2일
- 다.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6.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기구 조

직 개편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희망경제위원회”를 “지역경제협의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 여성참여 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비가 60%이상 넘지 않도록 상한 제한요건 신설(안 제5조제1항)
- 위원회 직속 상설 사무국 설치의 오해 소지가 있는 일부규정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2항)
-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 별 소관사무 일부 조정(안 제11조 제1항)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희망경제위원회’의 명칭을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에 규정한 ‘지역경제협의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sup>1)</sup>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의 위반 소지가 있는 위원회활동 지원부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지역경제협의회로의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에서 제2조)

-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2)에서 시·도협의회에 제출한 의안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법령에서 자문기관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은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자문기관을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음<sup>3)</sup>
- 한편, 서울시는 종전에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2012.9.28.), 「서울특별

2)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제261호-2010.2.1.)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을 희망경제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으로 정하였음.

- 따라서 현재 ‘희망경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의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며, ‘지역경제협의회’로의 제명과 명칭 변경은 위법적 요소를 해소하는 것으로 타당함.

#### 다. 협의회 기능 및 구성 등(안 제4조, 제5조, 제11조)

- 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을 조례 제4조에서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sup>4)</sup>, 안 제4조에서 “시 관내 일자리창출사업의 정책수립

---

4)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시 산업·경제에 관한 주요 거시적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 산업·경제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 관내 2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시 신성장동력산업 및 도심형 제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산업·경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정책집행사항으로 거시적인 정책협의를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산업·경제 분야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14. 시 관내 마을기업의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시 관내 금융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향후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자문기구 간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 방지가 목적임.

- 안 제11조 제2항에서 협의회외 분과위원회(3개)와 특별위원회(1개) 위원의 정원을 각 10명에서 각 7명으로, 안 제5조에서 협의회외 위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안 제5조는 협의회 구성시에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성이 60%로 넘지 않도록 하여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안 제5조 제3항 제1호(창조경제기획관)·제2호(일자리기획단장)와 안 제11조 제1항의 제2호(산업경제 분과위원회)와 제4호(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는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과 업무의 변경에 따른 것임.

#### 라. 사무처리(안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

---

16. 시 관내 일자리창출사업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관에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 제1항은 위원회 활동 지원 부서와 사무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자문기관의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운영이라는 위법 논란을 차단하는 것으로 바람직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희망경제위원회는 경제진흥본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치되었는데, 사회적경제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면 종전의 방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 경제진흥본부장 답변 :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고려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독립된 위원회의 신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위원회 및 부서와의 협력 등의 문제는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 V.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관련 자문의 경우에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는 제2조 단서의 규정이 있으므로, 희망경제위원

회의 명칭을 수정하지 않으며,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정원을 9명으로 조정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하는 안전 관련 자문의 경우에 지역경제 협의회로 본다는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으며, 희망경제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함(안 제1조, 제2조)
-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정원을 9명으로 조정함(안 제4조, 제11조)

##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71
----------	--------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2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관련 자문의 경우에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는 제2조 단서의 규정이 있으므로, 희망경제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지 않으며,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정원을 9명으로 조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관련 자문의 경우에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는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으며, 희망경제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함(안 제1조, 제2조)
-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정원을 9명으로 조정함(안 제4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경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를 “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희망경제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 중에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희망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제2조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조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때에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

안 제4조의 본문의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안 제4조제17호를 제16호로 한다.

안 제5조제1항과 제3항제8호 중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의 조명을 “(협의회의 회의)”에서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협의회”를 “위원장이 위원회”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협의회의”를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위원회의”로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항 중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본문 중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협의회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한다.

안 제14조 중 “외에 협의회회의”를 “외에 위원회회의”로 하며, “대하여는 협의회회의”를 “대하여는 위원회회의”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제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희망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정책사무 전반에 대한 자문기관</p>	<p><u>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경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u> --  <u>서울특별시 지역경제 협의회</u>-----                      -----                      -----                      -----                      -----.</p> <p>제2조(설치) -----                      -----                      -----                      -----                      -----</p>	<p><u>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설치) -----                      -----                      -----                      -----                      -----</p>

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조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때에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 10. (생략)
1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

-----  
----- 지역경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후단 삭제〉

제4조(기능) 협의회-----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협의회 -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이 경우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의견의 수렴 및 조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때에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로 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

<p>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p>	<p>----- -----</p>	<p>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p>
<p>13.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p>	<p>12.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p>	<p>〈삭제〉</p>
<p>14. ~ 16. (생략)</p>	<p>13. ~ 15. (현행 제14호~제16호와 같음)</p>	<p>13. ~ 15. (현행 제14호~제16호와 같음)</p>
<p>17. 시 관내 일자리 창출사업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p>	<p>16. 〈삭제〉</p>	
<p>18. (생략)</p>	<p>17. (현행 제18호와 같음)</p>	<p>16. (현행 제18호와 같음)</p>
<p>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5조(구성) ① 협의회 ----- 30명 ----- ---- 구성하며,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제5조(구성) ① 위원회 ----- -- 30명 ----- ----- 구성하며,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p>	<p>③ -----</p>	<p>③ -----</p>

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경제정책관

2. 일자리정책관

3. 산업 및 경제 관  
련 분야의 시민단  
체(「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1년 이상 산  
업·경제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 7. (생략)

8. 그 밖에 시장이  
제3호, 제5호, 제6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1. 창조경제기획관

2. 일자리기획단장

3. -----  
-----  
----- 「비영리민  
간단체지원법」 -----

4. ~ 7. (현행과 같  
음)

8. -----  
-----  
-----  
----- 협의회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1. 창조경제기획관

2. 일자리기획단장

3. -----  
-----  
----- 「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 -----

4. ~ 7. (현행과 같  
음)

8.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소관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제10조(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당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

① -----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회의 회의)

① ----- 협회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협회-----  
-----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처리)

①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협회의 -----  
-----  
협회-----  
----- 총괄·조정하게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회의)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처리)

①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위원회의 -----  
-----  
위원회-----  
----- 총괄·조정하게



하여 경제진흥실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  
하여 위원회 활동 지  
원부서를 두고 필요  
한 사무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도의 전  
문지식과 경험이 요  
구되는 산업·경제정  
책에 대한 자문을 수  
행하는 위원회의 특  
성을 고려하여 위원  
회 활동 지원부서의  
지원활동 중 안전의  
검토·조정업무를 전  
문기관 또는 단체, 관  
련 전문가 등에게 조  
사 또는 연구 등을 하  
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  
다.

할-----  
-----  
-----  
-----.

② -----  
-----  
-----  
----- 협의회의 -----  
----- 안전 -----  
-----  
-----  
-----  
-----  
-----  
-----  
-----.

제 11 조 (분과위원회  
등) ① 협의회의 ---  
-----  
-----  
-----  
-----.

할-----.

② -----  
-----  
-----  
----- 위원회의 -----  
----- 안전 -----  
-----  
-----  
-----  
-----  
-----  
-----.

제 11 조 (분과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  
음)

1.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2. 중소기업육성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분과위원회

3. 물가안정·소비자보호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생활경제분과위원회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1. -----  
-----  
-----  
-----  
-----  
-----  
-----  
-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2.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3. -----  
-----  
-----  
-----  
-----  
생활경제 분과위원회

4.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중소상공인 -----  
-----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

<삭 제>

1.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  
-----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 -----  
-----  
-----  
생활경제 분과위원회

3.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중소상공인 -----  
-----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자문하는 안건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  
----- 7명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 -----  
-----  
-----  
-----  
-----  
-----.

제14조(운영세칙) -----  
----- 외에  
협의회의 -----  
-----  
-----  
-----  
-----  
-----  
-----  
-----.

부 칙

② -----  
----- 9명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희망  
경제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된 것으로 보며, 위  
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와 제17호를 삭제하고, 제14호부터 제16호를 각각 제13호에서 제15호로 하고, 제18호를 제16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50명”을 “30명”으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조경제기획관
2. 일자리기획단장

제5조제3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위원회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진흥실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두고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할”을 “총괄·

조정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의 지원활동 중 안전”을 “안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제11조제1항제3호 중 “생활경제분과위원회”를 “생활경제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중소상공인”으로, “폴뿌리경제특별위원회”를 “폴뿌리경제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2명”을 “9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p> <p>1. ~ 12. (생략)</p> <p>13.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p> <p>14.~15.(생략)</p> <p>17. 시 관내 일자리창출사업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p> <p>18. (생략)</p>	<p>제4조(기능)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3.~15. (현행 제14호~제16호와 같음)</p> <p>〈삭제〉</p> <p>16. (현행 제18호와 같음)</p>
<p>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u>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산업경제정책관</u></p> <p>2. <u>일자리정책관</u></p>	<p>제5조(구성) ① ----- ----- <u>30명</u> ----- --- <u>구성하며,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u>창조경제기획관</u></p> <p>2. <u>일자리기획단장</u></p>

3. 산업 및 경제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1년 이상 산업·경제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 8. (생략)

3.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  
-----  
-----  
-----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진흥실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두고 필요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산업·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의 지원활동 중 안건의 검토·조정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리) ① 시장은 경제진흥본부장에게 위원회의 -----  
-----  
----- 총괄·조정하게 할 -----  
-----.

② -----  
-----  
-----  
----- 안건 -----  
-----  
-----.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  
-----  
-----  
-----.



1.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2. 중소기업육성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분과위원회

3.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생활경제분과위원회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폴뿌리경제특별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략)

〈삭 제〉

1.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분과위원회

2. -----  
-----  
----- 생활경제분과위원회

3. 대, 중,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 -----  
--- 폴뿌리경제특별위원회

② -----  
- 9명 -----  
-

③ ~ ⑤ (현행과 같음)